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105
----------	------

제출일자 : 2022. 4. 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2020. 2. 18.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 지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및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인 법인 사업주
- 나.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 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 세목별 감면내역 (2022년도에 한함)

가. 재산세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 원 (1구 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인하 기준임대료 : 2019년 월평균임대료 (※ 단, 2020년 최초 임대인 경우 2020년 월평균임대료 기준, 2021년 최초 임대인 경우 2021년 월평균임대료 기준)

나. 주민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한다.

3. 감면 추계액: 3.9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계	주 민 세				재 산 세	비고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법인)	종업원분	재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3.7	2.7	1.0				
지원 의료기관	0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0.2					0.2	

4.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

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라. 관련공문

(1)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통보: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600(2022.2.14.)

(2)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2587(2022.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 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 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4) 그 밖의 법인: 5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략)

② 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담배소매인
2. 삭제
3. 삭제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

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2

관련 공문

※ 지방세 지원 지침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00(2022. 2. 14.)]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2587(2022. 2. 23.)]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계획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조세부담 완화 필요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등 제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 예: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채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채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20.12월분 자동차세, '21.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분, 재산세 등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지방세제 지원 시책 **홍보** 및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신청시 주요 지원대상에 대하여 **적극적 인정·지원**